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
관한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5년 2월 13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, 운영희 의원, 장규권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5년 2월 1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등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소방대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,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자율소방대 지원(안 제4조)
- 자율소방대 평가(안 제5조)
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
- 표창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,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- 동 제정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,
 - 안 제2조에서는 ‘전통시장’, ‘상점가’, ‘자율소방대’ 등의 정의에 대하여,
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전통시장 등의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,
 - 안 제4조에서는 자율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지원절차, 선정기준 등 지원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,
 - 안 제5조에서는 자율소방대 평가에 대하여,
 -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,
 - 안 제7조에서는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우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율소방대는 8곳이 금천소방서에 등록되어 있으며 대원수는 총 116명임(붙임 2 참조).

-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에서 2024.12.30 조례를 제정하였음
- 시장 상인의 대부분은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로 자율소방대 활동 및 화재 안전관리에 다소 소극적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,
- 자율소방대 및 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상인들의 낮은 관심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.
- 이에, 본 제정 조례안은 자율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제정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.
-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